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지도위원회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학생지원과), 02-970-6043

제정 2012. 3. 1.

개정 2017. 7. 25.

개정 2020. 10. 14.

개정 2023. 2. 20.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85조제2항에 따른 학생활동의 지도를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) 학생지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
 - 2. 학생자치기구 운영지도
 - 가. 회칙 제정에 관한 사항
 - 나. 학생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인권센터장 또는 인권부센터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회는 학생처장 및 인권센터장 또는 인권부센터장의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- 1. 단과대학별 전임교원
- 2. 법학·행정 및 교육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련 교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, 해당 사안의 검증 또는 조사, 감정을 요청할수 있다.
- 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회 특성상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.
- 제5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7조(운영세칙) 이 규정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(제31호, 2012. 3. 1)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399호, 2017. 7. 25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565호, 2020. 10. 14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737호, 2023. 2. 20.)

이 규정은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